

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511호
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9월 28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,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의 부지면적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,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5조의2)
- 나.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의 부지면적의 산정은 시설부지면적과 주변녹지대 설치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함.(안 별표 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 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 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
 - 대법원 판결(2019. 1.10. 선고, 2016두54039 판결)
- 나. 예산조치 : 2021년 1,764,221천원 편성 (2020년 1,737,542천원)
- 다. 합 의 :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원안 의결(기금 존치 연장)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20. 8.27. ~ 2020. 9.16.) 결과 :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별표 제2호나목2)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) 부지면적 : 가) 시설부지면적 + 나) 주변녹지대 설치면적

별표 제2호나목2)호나)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다)목을 삭제한다.

- 나)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
 -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 이상
 -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 이상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5조의2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1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<p>[별표]</p> <p>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부지매입비용 산정</p> <p>가. 적 용 :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공통 적용</p> <p>나. 부지매입비용 : 1) 부지매입단가 × 2) 부지면적</p> <p>1) 부지매입단가 : 해당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</p> <p>2) 부지면적 : 가) 시설부지면적 + 나) 주민편익시설면적 + 다) 주변녹지대 설치면적</p> <p>가) 시설부지 면적</p>		<p>[별표]</p> <p>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부지매입비용 산정</p> <p>가. 적 용 :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공통 적용</p> <p>나. 부지매입비용 : 1) 부지매입단가 × 2) 부지면적</p> <p>1) 부지매입단가 : 해당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</p> <p>2) 부지면적 : 가) 시설부지면적 + 나) 주변녹지대 설치면적</p> <p>가) 시설부지 면적</p>	
구 분	소요 면적	비 고	
폐기물 처리 시설	100톤/일 이하	40㎡/톤	1기 기준 4,000㎡(1,200평)이하
	100~300톤/일	30㎡/톤	1기 기준 4,000㎡(1,200평)이하
	300~500톤/일	20㎡/톤	1기 기준 4,000㎡(1,200평)이하
	500톤/일 초과	10~15㎡/톤	1기 기준 4,000㎡(1,200평)이하
관리동	500톤/일	330㎡	작업인원 35~50명 기준
구 분	소요 면적	비 고	
폐기물 처리 시설	100톤/일 이하	40㎡/톤	1기 기준 4,000㎡(1,200평)이하
	100~300톤/일	30㎡/톤	1기 기준 4,000㎡(1,200평)이하
	300~500톤/일	20㎡/톤	1기 기준 4,000㎡(1,200평)이하
	500톤/일 초과	10~15㎡/톤	1기 기준 4,000㎡(1,200평)이하
관리동	500톤/일 이하	330㎡	작업인원 35~50명 기준

현행			개정안		
구분	소요면적	비고	구분	소요면적	비고
	이하				
	500톤/일 초과	500㎡		500톤/일 초과	500㎡
	500톤/일 이하	330㎡		500톤/일 이하	330㎡
세차동 등 기타시설	500톤/일 초과	500㎡		500톤/일 초과	500㎡
건폐율	40% 이하	계획관리지역 기준	건폐율	40% 이하	계획관리지역 기준

※ "톤수 산정"은 제1호의 각 시설별로 산출된 '폐기물발생량(톤수)' 적용

※ "톤수 산정"은 제1호의 각 시설별로 산출된 '폐기물발생량(톤수)' 적용

나) 주민편익시설 면적 : 시설부지면적의 10% 적용

다)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

-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 이상
-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 이상

나)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

-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 이상
-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 이상

<삭 제>

【관계 법령】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

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**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**

④ (생략)

□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(宅地)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내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~ ④ (생략)

□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)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(宅地)"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(이하 이 조에서 "택지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② 법 제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"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.

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납부금액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.

1.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: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
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

가. 소각시설의 경우: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,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

나.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: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·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

④ ~ ⑧ (생략)

□ 대법원 판결(2019. 1.10. 선고, 2016두54039 판결)

- (대법원 판결) 정비대상 규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조례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위법·무효 판결

대법원 2019. 1. 10. 선고, 2016두54039 판결

...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러한 조례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,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.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령 규정의 문언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,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고,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. ... (중략) ...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규정은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. 사업시행자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,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 문언의 해석상 예측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비용부담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조례 규정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.